

### 『KB퇴직연금정기예금』특약

### 제1조 적용범위

KB퇴직연금정기예금(이하 '이 예금'이라 합니다)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, 동법 시행령, 동법 시행규칙, 퇴직연금감독규정,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거치식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.

### 제2조 취급대상

이 예금은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지시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취급할 수 있습니다.

### 제3조 예금과목

이 예금의 예금과목은 정기예금으로 합니다.

### 제4조 저축금액

이 예금의 저축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.

### 제5조 계약기간

- ① 이 예금은 고정금리형, 변동금리형 또는 디폴트옵션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.
- ② 고정금리형의 계약기간은 1개월에서 60개월(5년) 이내에서 연, 월, 일로 합니다.
- ③ 변동금리형의 계약기간은 1년이며, 신규 가입할 때 3개월회전 또는 6개월회전 중 1가지를 정하여야 합니다.
- ④ 디폴트옵션형의 계약기간은 36개월에서 60개월 이내에서 연, 월, 일로 합니다.

### 제6조 만기처리방법

- ① 확정급여형(DB) 퇴직연금
- 1. 고정금리형 중 일 단위 계약은 사용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계약기간이 12개월인 월단위 계약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합니다.
- 2. 고정금리형 중 연, 월단위 계약과 변동금리형은 사용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합니다.
- 3. 재예치 통지를 요청한 고객에 한하여 자동 재예치에 대한 내용을 고객이 지정한 이메일로 통지합니다.
- ② 확정기여형(DC), 기업형(IRP) 또는 개인형(IRP) 퇴직연금
- 1. 이 예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1조3에 의해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 됩니다.
- 2. 디폴트옵션형 중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 상품과 함께 포트폴리오의 형태로 이 예금이 편입된 경우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합니다.

#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

### 제7조 이자

- ① 이 예금의 만기에는 약정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만기이자율, 만기일이 완전히 지난 후 지급일 전날의 기간에 대하여는 만기후이자율로 셈하며, 만기일 이전에 제8조①항의 사유로 특별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이자율, 만기일 이전에 전액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자율로 셈하여 지급합니다. 단, 제8조①항6호「퇴직연금 수수료 취득을 위한 경우」, 12호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4 및 제13조6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·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」의 특별중도해지를 할 때에는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(변동금리형은 회전기간별 시작일)에 적용된 이자율(가산금리 포함)로 셈합니다. (신규 또는 재예치후 1개월 미만의 특별중도해지 포함)
- ② 고정금리형, 디폴트옵션형은 해지 사유에 따라 신규일 및 재예치일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자율이 적용되며, 변동금리형은 해지 사유에 따라 매 회전기간 시작일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자율이 적용됩니다. 다만 변동금리형을 만기일 이전에 특별중도해지 또는 중도해지하는 경우 회전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.
- ③ 고정금리형, 변동금리형은 신규 또는 재예치 후 1개월미만에 특별중도해지하거나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의 경과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합니다.

### 제8조 특별중도해지

- ① 이 예금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
- 1.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
- 2.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8조 2항에서 중도인출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
- 3. 퇴직연금가입자가 기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는 제도 전환을 위한 가입자 제도전환 또는 가입자이전의 경우
- 4. 동일 자산관리기관 내 계약이전하는 경우
- 5.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경우
- 6. 퇴직연금 수수료 취득을 위한 경우
- 7. 가입자의 사망
- 8.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,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한 경우
- 9.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자의 파산 또는 폐업의 경우
- 10.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
- 11. 수탁자의 사임
- 12.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4 및 제13조6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·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

### 제9조 분할해지

- 이 예금은 만기(중도)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며,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가입자별로 해지횟수를 산정합니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지횟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
- 1.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퇴직급여 지급
- 2. 퇴직급여의 연금형태 지급
- 3. 수수료 납부를 위한 경우

## www.kbstar.com KB-Carlon

### 제10조 거래방법

이 예금은 예금주와 은행간에 전문(電文)으로 거래하여, 통장은 발행하지 않습니다.

### 제11조 세제혜택

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이 불가합니다.

부 칙

이 약관은 2015.3.20부터 시행합니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약관은 2022.12.2부터 시행합니다.

제2조 (경과규정)

제6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 2023년 7월 11일까지 자동재예치 됩니다.

부 칙

이 약관은 2025.6.1부터 시행하며, 시행일 이후 신규 및 재예치 계좌에 한하여 적용됩니다.

본 특약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공됩니다.